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19 발의연월일: 2025. 1. 3.

발 의 자:서영석·박해철·이해식

임광현 • 박홍배 • 윤준병

박민규・노종면・김 윤

윤종군 • 윤건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.

그런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약물 반출, 공중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, 현행 「의료법」과 유사하게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, 소유자등의 요청 등의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 제목 "(개설)"을 "(개설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없다"를 "없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
- 2. 동물의 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
- 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
- 4.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진료하는 경우
- 5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동물이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7조 <u>(개설)</u> ① 수의사는 이 법 | 제17조(개설 등) ① |
| 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| |
|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| |
| 수 <u>없다</u> . | <u>없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</u> |
| |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|
| | 그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 |
| | 업을 하여야 한다. |
| <u><신 설></u> | 1.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응급 |
| | 처치를 하는 경우 |
| <u><신 설></u> | 2. 동물의 소유자등의 요청에 |
| | 따라 진료하는 경우 |
| <u><신 설></u> | 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|
| |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|
| | 요청하는 경우 |
| <u> <신 설></u> | 4.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 |
| | 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 |
| | 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진 |
| | 료하는 경우 |
| <u> <신 설></u> | 5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|
| | 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|
| | 동물이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|
| |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|
| | 있는 경우 |

 ② ~ ⑤ (생 략)
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 제39조(벌칙) ① (생 략)
 제39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 ②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 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② (생 략)
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